

대구환경공단 위원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(2020년)

| 위원회명 | 위원회 구성 | | | | 개최 주기 | 설치목적 | 설치근거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위원장명 | 위원장 임기 | 총 위원수 | 위촉 위원수 | | | |
| 이사회 | 최** | 이사회 의결로 선임된 기간 | 10 | 7 | 정기(3, 12월), 임시(이사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3인 이상의 요청시) | 공단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등 의결 | 이사회운영 규정 |
| 경영자문위원회 | 위원회에서 호선 | 2년 | 12 | 10 | 정기(2회), 수시 | 공단 주요 경영방침 결정 및 전문가 조언 | 공단 직제규정 제11조 |
| 인권경영위원회 | 민** | 2년 | 9 | 5 | 정기(1회) | 1. 인권경영운영 계획안 및 관련 규정 심의 2. 인권영향평가 추진 3. 임직원 인권교육 및 유관기관 확산 활동 |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18조 |
| 위기관리위원회 | 이사장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14 | 0 | 수시 | 1. 비상대책기구 구성 및 운영, 위기종료 결정 2. 위기관리지침 개정 의결 | 직제규정 제16조 |
| 인사위원회 | 민**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9 | 5 | 수시 |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함 | 공단 인사규정 제7조 |
| 임원추천 위원회 | 최** | 위원회 해산시까지 | 7 | 7 | 수시 | 공단 임원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함 |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내규 |
| 비정규직 사전심사 위원회 | 김**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5 | - | 수시 | 비정규직 남용방지를 위해 채용 전 사전심의를 위함 | 기간제근로자 관리내규 제4조의 1 |
| 공적심사 위원회 | 민**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5 | - | 수시 | 합리적이고 공정한 포상대상자 선정을 위함(장관이하 훈격포상대상자) | 인사규정시행내규 제45조제6항 |
| 성희롱 예방 및 | 민** | 그 직에 | 6 | 2 | 수시 |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함 | 성희롱·성폭력 등의 예방과 |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심의위원회 | | 재임하는 기간 | | | | | 처리에 관한 세부지침 제10조 |
| 주택운영위원회 | 민**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5 | - | 수시 | 시택운영관련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함 | 복리후생규정 제9조 |
| 피복선정 위원회 | 정** 이**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12 | - | 수시 | 피복제작·구매관련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함 | 복리후생규정 제11조 |
| 기록물평가 심의회 | 김** |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 | 5 | 2 | 수시 |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평가, 기록물 폐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함 |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, 공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1조 |
| 연구자문위원회 | 정** | 2년 | 7 | 4 | 정기(연 1회), 임시(연 1회) | 공단에 필요한 환경신기술 및 연구동향 소개, 공단의 기술적 현안문제 해결방안 제시, 환경기초시설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 | 공단 직제규정 제11조, 제16조 및 연구자문위원회 운영내규 제3조 |
| 안전경영 위원회 | 경영관리 본부장 | 2년 (당연직의 경우 그 보직기간) | 10명 이내 | 5 | 정기(6, 12월), 수시 | · 인명 및 재난 안전관리 등 안전경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여 안전한 일터 구현 | ·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· 안전보건관리 시행내규 제15조의2 |
| 산업안전보건위원회 | 이사장, 노동조합 위원장 | 3년 | 10명 | - | 분기 | ·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노사의 산업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 | ·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|
| 안전관리자문위원회 | - | - | 6 | 6 | 반기, 수시 | · 다양하고 복잡해진 재난, 안전사고에 체계적 대응 및 현장 위주 안전활동 확대 등 재난대응 역량 강화 | · 공단 직제규정 제 11조(고문·전문위원 등) 제1항 |
| 설계공법 선정 | 이** | 설계공법 | 5 | 1 | 수시 | 공단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| ○ 국토교통부 훈령 제547호 |

| 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|---|---|
| 위원회 | | 적용분야 소관 부서장 임기 내 | | | | 적정 기술공법 선정 투명성 제고 (대구시 신기술 활용심의 미만 금액 심의) |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」 제45조(위원회 심의 등) · 제46조(유사신기술의 활용) |
| 물품 및 규격심의 위원회 | 운영지원 처장 | 당연직 | 7인 이내 | 6 | 수시 | 주요물품 제조 구매 업무추진에 있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소지예방 및 지방계약 관련 법령 준수 | 대구환경공단 임직원행동강령내규 제22조 |
| 직무발명심의위 원회 | 사업운영 본부장 | 당연직 | 10인 이내 | 7 | 수시 | 특허출원 신고 과제의 직무연관성과 권리승계 여부 결정을 위한 심의 | 대구환경공단 제안규정 제24조,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·관리 및 보상 조례 |